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6. 22(목) 10:00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2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5. 31.
- 라. 회부일자 : 2023. 5. 31.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4조,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금천구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함.

## 3. 참고사항

###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144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 관련서류 : 2022회계연도 결산서(안)

## 4. 예비비 지출 현황

### ○ 일반예비비

(단위: 원)

부서명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계		368,875,000	340,207,410	28,667,590	
복지정책과	소계	151,690,000	123,022,760	28,667,240	22년 10월 이태원 사고
	이태원 사고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10,800,000	10,800,000		사망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장례비 지원(국시비매 칭)
	생활지원비 지원	140,890,000	112,222,760	28,667,240	코로나19 지속적 발생 및 최근 변이바이러스 확산 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 활지원비 신청자 폭주로 구청(복지정책과) 및 동주 민센터 인력 기능보강 필 요
가족정책과	소계	217,185,000	217,184,650	350	
	어린이집 환경개선	39,745,000	39,744,65	350	국공립어린이집 점유 국유지 무상대부 관련 기존 미납 대부료 납부
	국공립직장 혼합형 운영	77,440,000	77,440,000	0	어린이집을 안정적 운영하여 어린이집에 등원예정인 어린이와 부모님의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보호
	국공립직장 혼합형 운영	100,000,000	100,000,000	0	어린이집을 안정적 운영하여 어린이집에 등원예정인 어린이와 부모님의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보호

○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단위: 원)

부서명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계		30,500,000	0	30,500,000	
어르신 장애인과	노인복지(의료, 재가)시설 지원 및 관리	30,500,000		30,500,000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임시회의 결과(2021.1.21.) 자치구 재난지원 사업 실 시 결의에 따라 재원 마 련

## 5. 검토의견

- 2022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 복지정책과 2건 1억 2,302만원, 가족정책과  
3건 2억 1,718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어르신장애인과 1건 3,050만원을 지출하였음.  
지출 사유는 긴급 생활지원,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함.
- 따라서 복지가족국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타당한 지출이라  
판단됨.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8호, 2023. 6. 7., 일부개정]

-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